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49108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62140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4

296,644,702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311,744,305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위 문언은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1]와 달리 법인지방소득

1)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4

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명시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을 동일한 금액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구 지방세법이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구 지방세법 제103조의41 참조)과 구별된다.

나아가 지방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개별적인 사유에 의한 세액공제나 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인세와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법인세는 서로 전체적인 구조와 목적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⑵ 피고는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되면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제103조의19를 신설한 취지는 종래 법인세의 부가세(sur-tax)인 '지방소득세 법인분'으로 부과하던 것을 독립세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세법만의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점, ② 피고가 그 논거로 들고 있는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보더라도, '개정안(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표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손금 및 익금의 산입·불산입 등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같은 국세 관련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4

의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이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에서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 및 문제점이 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제4호증 제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의 과세표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본문이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는 제103조의19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로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4) 직접외국납부세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즉 익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4

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는 의미 역시 세액공제나 적어도 손금산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의제 익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이상 위 의제 익금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직접외국납부세액 중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손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가 직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이므로, 적어도 직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는 세액공제를 전제로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따라 전액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외국에 직접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공제한도'라 한다)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이와 같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직접외국납부세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4

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직접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정해놓은 것일 뿐이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결과적으로 당해 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를 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으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2].

(피고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게 되면 법인세에 관한 세액공제를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원고가 지방세에서도 중복하여 우대를 받게 되므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비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2)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이유가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참조), 직접외국납부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직접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